

광주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7059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10. 1 선고 2020나7059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단405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지훈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박인동

변론 종결 2021. 9. 3.

판결 선고 2021. 10. 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가단405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와 지급을 명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 B와 주식회사 D 사이에 2019. 11. 7.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3,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C과 주식회사 D 사이에 2019. 11. 7.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에 관하여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의 가항, 제3의 가항 및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C은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 3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9. 10. 30.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F아파트 신축공사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D에 대하여 277,837,2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원고는 2019. 5.과 같은 해 8. D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전자어음을 각 교부받았다.

3) 원고는 위 물품대금과 약속어음금 합계 477,837,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2019차5716)을 신청하여 2019. 11. 25.자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D이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D의 무자력

1) D은 2019. 11. 10.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다.

2) D은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당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무자력이다.

다.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

D은 J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9. 11. 7. 그중 3,000만 원의 채권을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 B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을 또 다른 채권자인 피고 C에게 각 양도하였다(이하 피고들에게 양도한 각 채권과 각 양도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채권',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이후 E은 2019. 11. 29. 피고 B에게 3,000만 원,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및 어음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이 사건에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 갑 제6호증,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① D이 2019.

11.경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제의하면서 '원고는 D 및 주식회사 L과 납품시공거래를 함에 있어 발생한 채권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채권양도양수 받았음을 확인하오며, 추후 위 회수 채권으로 인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B은 D에 대하여 J 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 관련 채권자이고, 피고 C은 위 공사 및 다른 현장과 관련한 물품대금채권자에 해당하나, D이 채권자들 일부를 선별하여 그중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은 피고들에 대한 각 채무의 본래 목적과 무관하다고 보이는 점, ③ 특히 D이 부도나기 3일 전에 D의 여러 채권자 중 피고들을 비롯한 일부 채권자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처분행위로서 원칙적으로 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과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을 들어 D이 피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지 아니하며 이를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은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편파변제의 수단으로 채권양도 등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남편 K은 D의 등기사내이사였는바, 피고 C이 D의 부도 직전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D의 채무초과 및 편파변제 관련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취소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물의 반환에 갈음한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변제로 수령한 3,000만 원, 피고 C은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¹⁾ 피고들에 대하여 그 취소와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채승원

판사박주영

판사김수양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돈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다가, 그중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만 일부 항소하였다.